

# 地方文化行政의 發展方案

Revitalizing cultural policies in local government

任 鶴 淳

(韓國文化政策開發院 責任研究員)

— <目 次> —

I. 序 論

II. 地方文化行政의 價值變化

III. 地方自治團體의 文化行政評價

IV. 地方文化行政의 發展方向

V. 結 論

## <ABSTACT>

This article is a study of the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of government arts policy at the local level. It starts from the recognition that regional culture will play a significant role in regional development and that local governments will have a central role in regional cultural policy. The experience of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s from central to local government in 1995 encourages local governments to adopt cultural policies as strategies for regional regeneration.

In local government level, cultural policies will have to aim at the cultural welfare and at the regional development. To achieve this policy value, local governments will have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speciality, efficiency, creativity and planning ability of their cultural policies. Local government should also encourage the marketplace and private non profit organizations to supply the cultural services. Policies on culture will have to be linked policies in urban planning, urban design and development, tourism, education, architecture, urban marketing, sports, youth, etc.

## I. 序 論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문화복지가 문화정책의 핵심가치로 부각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문화자치단체를 표방하는 경우도 하나 둘씩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와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도 기능과 경제가치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주민의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지방문화행정의 가치변화 현상과 문화행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문화복지와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문화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다.

## II. 地方文化行政의 價値變化

### 1. 地方文化行政의 形成過程

1980년대부터 지역문화의 활성화가 문화정책의 핵심 가치로 등장하기 시작한 이래 지역 문화정책은 주로 문화예술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수준 향상에 초점을 두어왔다. 이러한 정책목표는 “80년대 새문화정책(’81년)”, “지방문화중흥 5개년 계획(’83)”, “문화발전 10개년 계획(’90년)”, “신한국 문화창달 5개년계획(’93년)”, “새문화·체육·청소년 진흥 5개년 계획(’94년)” 등에 일관되게 나타나 있으며, ’96년초부터 문화체육부 문화복지기획단에서도 문화복지정책의 하나로 문화도시 건설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의제로 논의하고 있다(임학순, 1996: 61-62)

그러나 1980년대의 지역문화 활성화 전략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은 매우 미흡하였다. 자치단체들의 문화정책사업은 주로 전통문화예술과 문화재관리 사업 및 문화인프라 건립 사업에 한정된 것이었으며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의 지역문화정책은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반 구축 단계라고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시설이 건립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이후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전에는 문화시설의 대부분이 극장과 박물관, 사설미술관 뿐이었는데 비하여 1980년대 이후에는 점차 문화예술의 장르별 전문공간과 대규모의 문화시설이 조성되었다. 특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84년부터 꾸준히 진행된 문화예술회관 등 지역문화시설 확충 사업에 크게 기여하였다.

광역자치단체는 1984년부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1984년에서 1989년까지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금이 중요한 재원이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지원금이 중단되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기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지역문화 진흥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정은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문화예술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다. 80년대에 자치단체의 문화행정 조직은 공보 행정 조직과 혼재되어 있었으며, 문화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매우 낮은 실정이었다. 이 당시 문화행정 공무원들은 문화행정 부서에 근무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지 않았으며, 한직으로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임학순, 1994: 201-212).

## 2. 地方自治와 地方文化行政의 變化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정책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난 1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에도 새로운 경향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

첫째로 문화예술의 가치를 문화복지와 지역경쟁력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문화정책에 대하여 그리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문화예술을 지역발전의 맥락에서 접근하지 않았다. 문화예술을 지역활성화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매우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문화예술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도시발전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화마인드는 구체적인 정책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지난 1년동안의 자치체 경험은 지방 문화정책 흐름에 있어서 새로운 분기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문화정책의 가치가 “문화복지”와 “문화예술 진흥”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95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올해의 문화자치단체” 선정사업에서 문화자치단체로 선정된

광주시와 춘천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광주비엔날레는 문화예술이벤트가 지역의 이미지를 고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행사에는 62일의 전시행사기간 동안 입장객이 165만명에 달했다. 이 행사는 행사경비에 77억을 지출한데 반해 수입은 91억원으로 흑자운동을 하였으며, 생산유발 2,288억원, 소득유발 251억원, 고용유발 6,104명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1995). 그리고 1995년도에 「올해의 문화자치단체」로 선정된 춘천시에서 매년 열리는 춘천인형극제도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의 경제에도 파급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이러한 사례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마인드를 형성하도록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한편 서유럽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문화정책을 경제발전과 도시활성화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도시사례로는 영국의 글래스고우,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독일의 루르와 프랑크푸르트, 프랑스의 렌느와 몽펠리에, 영국의 글래스고우 등을 들 수 있다(F. Bianchi). 영국의 경우, 1970년대에는 주로 도시민의 문화활동에 문화정책의 초점을 두었지만,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도시의 경제와 경쟁력을 높이는데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도시의 문화프로그램들은 도시설계 전략, 도시미화, 보행자 전용도로 만들기, 아름다운 가로등 등 다양한 정책들과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렌느, 몽펠리아 등 프랑스의 지방도시들도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문화정책을 도시성장에 활용하는 적극적인 전략으로 추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독일에서도 쾌적한 주거환경, 환경의 질, 삶의 질이 중요해지면서 문화는 지역경제발전의 중요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중반이후부터 문화정책은 도시의 이미지를 증진시키는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독일도시들의 문화정책은 도시경제와의 관계에서 추진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로 기존의 문화와 공보기능을 분리하여 문화행정을 전담하는 조직체계를 갖춘 자치단체가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광주시, 춘천시, 수원시, 부천시, 진도군, 광명시 등과 같이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문화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에는 문화관 광국의 문화예술과를 문화행정계, 조형예술계, 공연예술계 등으로 세분하고, 광주시 산하에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는 “경기문화재단”을 비영리법인 형태로 설립하여 문화예술 지원사업과 기금관리 운영사업을 수

행하도록 하는 계획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한 점이 매우 두드러진다.

문화, 체육, 관광행정 업무의 연계를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는 자치단체도 많다. 예컨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주시와 강릉시는 문화관광국, 수원시, 청주시, 전주시, 제주시는 문화예술과, 춘천시는 문화예술담당관, 공주시, 보령시, 안동시, 진주시, 진도군, 담양군, 서귀포시, 나주시, 충주시, 순천시, 사천시, 남제주군, 평창군 등은 문화관광과(관광문화과, 문화관광담당관 등) 그리고 부천시, 광명시, 창원시, 의정부시, 구미시, 원주시, 목포시 등은 문화체육과(문화체육담당관) 를 두고 있다. 문화행정 담당 공무원들은 문화행정 업무가 확대되면서 이전에 비하여 훨씬 바쁘게 근무하고 있으며, 한직이라는 낙인은 그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아직 일부 자치단체에 한정된 것이다.

<표 1> 문화관련 조직표

문화행정조직	기 초 시 명
문화관광과	공주시(문화예술, 문화재 1·2, 관광, 관광시설), 보령시(문화예술, 관광), 안동시, 진주시(문화, 관광)
문화관광담당관	충주시(문화예술, 관광, 문화재), 순천시(문화, 문화재, 관광진흥)
문화관광담당관실	사천시(문화예술, 관광시설, 체육)
관광문화과	서귀포시(관광진흥, 관광시설, 문화)
문예관광과	나주시(문화예술, 관광)
문화예술과	수원시(문화관광, 예술), 청주시(예술, 문화관광), 전주시(예술, 관광), 제주시
문화예술담당관	춘천시
문화홍보담당관실	군포시
경영문화담당관	문경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강릉시(문화, 문화재, 예술)
문화관광국 문화과	경주시(문화, 문화재, 문화재시설)
문화체육과	의정부시(사회진흥, 문화예술, 생활체육), 창원시(문화, 예술, 체육지원), 부천시(공모, 문화), 광명시
문화체육담당관	구미시(문화예술, 체육진흥, 관광문화재)
문화체육담당관실	원주시(문화예술, 문화재관리, 체육청소년계, 홍보기획)
문예체육과	목포시(문화예술, 체육진흥)
문화공보(실, 담당관)	기타

셋째로 지방도시에서도 국제적인 규모의 문화예술축제를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례로는 광주비엔날레, 광주국제발레콩쿠르, 부산국제영화제, 춘천국제인형극제, 춘천국제마임페스티벌 등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자원은 대부분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국제적인 규모의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지방도시에서도 특색있는 국제 문화예술 축제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지역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춘천인형극제는 1989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춘천시에서 개최되는 인형극 행사로서, 그동안 일곱차례 개최되면서 춘천시의 국제문화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넷째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문화예술진흥조례 혹은 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 운영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문화예술기금을 조성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에서는 주로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이러한 경향을 보였으나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된 것이다. 남원시, 장수군, 부천시, 곡성군, 여주시, 강진군, 진주시 등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의령군, 상주시, 여주시, 강릉시, 나주시, 진해시, 논산시 등은 기금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 Ⅲ. 地方自治團體의 文化行政評價

#### 1. 文化行政 評價指標 開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정 평가지표는 문화행정을 평가하는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아직 지역문화행정의 평가모델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에서 지방문화행정에 대한 평가는 1995년에 “올해의 문화자치단체” 선정사업을 실시하면서부터 다소 활발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5년의 경우에는 주로 문화부문 투자, 문화재정 조성 노력 및 지원, 문화예술사업, 문화시설, 문화발전계획, 공공문화시설의 경영, 공립문화예술단체 등 7개 평가영역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중에서 문화부문 투자, 문화예술사업, 문화시설 등에 가중치를 더 부여하여 평가하였다(임학순, 1995: 199-227). 1996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지표로 문화발전 노력성 지표, 문화재정지표, 문화인프라 지표를 설정하고, 각 지표를 측정하여 시, 군, 구 단위로 문화발전 노력성 지수, 문화재정 지수, 문화인프라 지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올해의 문화자치단체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문화발전 노력성지수에 가장 크게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문화발전 노력성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예술 관련기관들이 지역의 문화예술창작 수준 향상,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수준 향상,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경쟁력 수준 향상 등 문화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문화정책의 전문성, 효과성, 창의성, 적극성 등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문화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 공립문화예술회관의 경영평가, 문화정

책과 도시정책의 연계 실태 등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정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 2. 文化行政의 專門性和 持續性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정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문화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문화행정 업무가 확대되고 문화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문화행정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문화행정 전문직 채용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 공무원들이 문화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문화행정 공무원들은 빈번한 전보로 인하여 전문성을 축적할 겨를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국장, 과장, 계장,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의 관장들은 문화행정에 종사한 지 2년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문화행정조직에 근무하는 일반 행정직들은 문화행정 업무를 어느 정도 알만하면 그 자리를 떠나게 됨에 따라 문화행정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였다(임학순, 1994: 201-212).

문화행정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 훈련기회와 프로그램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문화행정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고 지역의 공공문화예술 시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인력 양성이나 현 인력을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1987년부터 각 시, 도, 군, 구의 문화행정 실무 공무원 및 문화시설 운영요원, 전국문화원 사무국장, 문화시설 책임자, 전국 박물관, 미술관 큐레이터 등을 대상으로 지역 문화종사자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수프로그램은 대상인원이 적고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도 아직 전문화되어 있지 않다.

한편 문화체육부와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5년부터 매년 지방도시를 순회하면서 “전국문화행정 전문가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일정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정 담당 공무원과 지방문화원 종사자 등이 참여하여 지역문화발전과 관련된 세미나를 열고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지역문화의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문화행정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프로그램은 아니다.

## 3. 公立文化藝術會館의 經營評價

지방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행정조직과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공공문화시설들은 전문화된 인력 및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관료주의적 행태로 말미암아 고객중심의 효과적인 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공공문화공간이 문화경영 및 문화마케팅의 맥락에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방문화예술회관의 관장과 대부분의 직원들은 모두 공무원으로써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순환보직의 대상에 해당한다. 별정직 제도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확실적인 인사관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임명하여 문화행정직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승진에 제한되어 있으며 조직내 영향력은 미약한 실정이다. 지방문화예술회관은 모든 사업계획에 대하여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제를 받아야 한다. 그 결과 전문적인 기획도 관료들의 행태 때문에 쉽게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많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에는 자체 기획능력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관객을 개발하기 위한 전담부서가 편성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문화예술회관은 자체 기획보다는 대관위주의 단순 사무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임학순, 1994)

#### 4. 文化政策과 都市政策의 連繫實態

그동안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은 경제성장과 기능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으며, 문화정책과의 접목이 이루어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문화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은 문화적인 시각에서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의 개성을 살린 창조적인 문화도시 건설 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도시설계지구, 상세계획제도, 신도시택지개발사업계획, 도시재개발계획 등 일련의 도시계획에 문화시설 유치 및 문화환경 조성 계획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에 문화계획이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도시기본계획작성 지침에 의하여 문화계획은 사회개발계획의 하위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아직도 문화정책을 사회정책의 범주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이나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문화시설에 관한 지침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 규칙의 문화시설 관련 규정은 문화시설의 설립을 촉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규제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도시개발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문화예술 부문의 인사가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도시개발을 문화적인 시각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



체의 문화담당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개발 분야의 공무원들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2> 도시개발사업과 문화시설 설치 사례분석

사업시행자	사업지구	면적(m <sup>2</sup> )	건설호수(호)	사업기간	문화시설계획
대한주택공사	반포지구	536,670	3,786	'71. 8~'74.12	없음
	잠실지구	1,260,466	19,180	'75. 3~'78.10	없음
	둔촌지구	611,948	5,930	'79. 2~'80.12	없음
	개포지구	1,023,512	15,710	'81. 4~'84. 3	없음
	과천지구	1,303,716	13,522	'80.11~'84. 8	없음
	철산지구	1,139,527	14,753	'80.12~'86. 7	도서관 ; 1개, 대지면적 2,950 m <sup>2</sup>
	군자지구	373,551	6,462	'78 ~'85	도서관
	창동지구	491,946.6	6,500	'88. 2~'92.11	구민회관 ; 5,330.1m <sup>2</sup> (공용의 청사 부지내 건설)
	상계지구	3,308,270	39,862	'85.11~'91.12	없음
	등촌지구	760,632.6	12,370	'91.10~'95.12	없음
공인창지구(구리시)	중계(2)지구	1,346,696	16,978	'89. 7~'95.12	문화시설; 1,350m <sup>2</sup> (전체면적의 0.1%)
	인창지구	525,432	6,600	'92.12~'96.12	문화시설; 9,900m <sup>2</sup> (전체면적의 1.9%) 청소년시설; 3,300m <sup>2</sup> (전체면적의 0.6%)
	대구월성지구	487,938.5	7,747	'88.12~'92. 6	문화시설; 5,030.2m <sup>2</sup> (전체면적의 1.0%)
	부산금곡지구	115,177	2,260	'92.10~'95.12	없음
토지개발공사	군포지구	263,393	3,572	'92.12~'96.12	없음
	군포산본지구	4,203,186.5	41,974	'89. 8~'95. 1	없음
	광주 두암(2)	425,790	6,126	'90. 6~'95. 3	없음
	고덕지구	946,013	11,050	'82. 3~'85.11	없음
	고양·일산지구	15,735,771.0	69,000	'89. 6~'95.12	문화시설 47,338.4(전체면적의 0.3%)
서울시	안양·평촌지구	5,105,904.4	42,047	'89. 2~'95.12	문화연구시설 13,054.7(전체면적의 0.3%)
	성남·분당지구	19,639,008.0	97,580	'89. 5~'96.12	문화시설 31,479.6(전체면적의0.2%) 도서관 18,266.0 (전체면적의0.1%)
	신내지구	1,034,027	12,051	'91.12~'95.12	공공도서관 6,618
	수서지구	1,335,529.3	16,353	'90. 3~'95.12	없음
서울시 (변경전)	가양지구	977,265.8	16,282	'90. 8~'95.12	없음
	목동지구	4,375,391	26,640	'84. 1~'91. 6	도서관: 용지면적 4,244.4 문화시설: 용지면적 31,209.9 체육시설 : 용지면적 6,877.1

서울시, 대한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등이 실시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공공시설용지에 문화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이 경우에도 문화시설 부지 및 건립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실제로는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의 택지개발사업지구중 수서지구, 가양지구, 고덕지구의 토지이용 계획에는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용지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신내지구와 목동지구(변경전)의 토지이용계획에는 도서관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에도 문화시설 건립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며, 공공시설용지로 문화시설용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문화시설 용지

확보와 개발 관련 비용분담 및 재정 문제로 실제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 일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전체개발면적 15,735,711.0m<sup>2</sup>중에서 33.5%는 주택건설용지, 7.8%는 상업, 업무 용지이며, 58.7%가 공공시설용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문화시설 용지는 전체 총면적의 0.3%로 설정되어 있다. 성남 분당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총 면적 19,639,008.0m<sup>2</sup>중 주택건설용지는 6,350,179.9m<sup>2</sup>(32.4%), 상업업무용지 1,639,774.9m<sup>2</sup>(8.3%), 공공시설용지 11,649,053.2m<sup>2</sup>(59.3%)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문화시설용지는 31,479.6m<sup>2</sup>(0.2%), 도서관부지 18,238.7m<sup>2</sup>(0.1%)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시설 부지 확보 및 건물 건립은 아직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문화시설 토지 조성 및 건립 비용을 둘러싸고 이해 관계가 다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IV. 地方文化行政의 發展 方向

### 1. 地域文化政策의 基本方向

지역문화정책의 목표는 크게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수준 향상,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전통 문화예술 및 문화유산의 보존 개발,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인프라와 문화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문화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문화정책은 관광정책, 청소년정책, 지역홍보정책, 도시개발정책, 도시경관정책 등 연관되어 있는 다른 정책과 함께 총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네가지 지역문화정책 목표중에서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와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첫째로 문화복지는 문화적인 삶과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최근 문화정책의 중요한 이념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올해 문화체육부가 문화복지기획단을 발족하면서 '문화복지'는 문화정책의 핵심개념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문화복지는 그동안 문화정책의 목적으로 줄곧 일컬어져온 "문화예술 향유기회의 확산" 개념보다는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복지 이념은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서비스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문화권(cultural rights)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둘째로 문화예술을 활용한 도시 활성화 전략은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이 도시경쟁력을 높

이는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러한 접근전략은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비교적 최근에 대두된 것이다. 문화예술은 도시의 문화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도시의 매력을 창출함으로써 도시마케팅과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지역문화는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확립하는 중요한 자원으로써 지방자치의 토대를 형성한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 대두된 문화경제학 등 문화예술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이 지역 내로의 투자유도, 고용창출, 관광객유치, 소득증가 등 지역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규명하고 있다 (Gets, 1991; Myerscough 1988)

## 2. 文化行政의 專門性 向上

점차 확대되고 있는 문화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문화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행정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지방문화행정직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 훈련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연수부의 문화행정 연수프로그램 확대 개편방안, 새로 문화행정연수원을 신설하는 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1996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문화행정연수과정(일차로 문체부 공무원과 지방문화행정 공무원 대상)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의 문화행정연수과정 독립 신설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문 문화행정인력이 수요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문화행정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문화행정 전문인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전문분야별로 세분화하고 우수한 교수진과 교육기자재를 확보해야 하며 연수기간도 현재보다는 더 길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이러한 연수교육 교과과정에는 문화정책 문화경영, 문화마케팅, 문화산업, 문화예술이벤트, 문화관광, 국제문화교류, 문화재정, 문화예술기획론, 문화환경, 문화재관리, 박물관 경영, 문화예술 전문요원 과정(큐레이터, 디스플레이어, 조명, 음향, 영상, 무대, 연출 등), 문화예술사회교육과정, 문화정보론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직 공무원이 문화행정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문화행정 연수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문화행정 분야에 보직을 받기전에 이에 대한 훈련이나 경험을 할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문화행정 인력에 대한 해외연수기회를 확대하여 해외의 문화행정과 문화정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1995년부터 문화체육부가 실시하고 있는 “올해의 문화자치단체”로 선정된 지역의 공무원들에게 우선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둘째로 문화예술 행정부서 직원에 대한 보직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별정직의 충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별정직제도는 어느 정도 전문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들이 충원되어 지속적으로 문화행정직에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일관성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것은 현재 일반직 공무원의 빈번한 보직 순환으로 인해 나타나는 전문성과 일관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문화행정 직원 뿐만 아니라 과장이나 계장 등 문화행정 실무책임자 등도 전문 별정직으로 충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별정직이 일반하위 직급에만 충원되는 경우에는 품의제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별정직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문화행정직에 대한 직무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문화예술회관의 관장직은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람중에서 경영능력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인사가 문화예술회관의 관장으로 임용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예술회관의 관장은 조직의 혁신을 위하여 임기제(3년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관장은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자율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장은 현재 서기관 혹은 사무관급에서 1급으로 대우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풍토가 조성되어야 문화예술회관의 관장이라는 자리가 책임있고 명예로운 자리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으로 하기 보다는 공공법인화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로 무대, 연출, 조명, 음향, 영상, 전시, 기획, 마케팅 등 문화행정인력에 대한 자격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공공문화시설에 충원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시점에 이르렀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교에 이러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일반직 공무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인력구조를 문화행정 전문가 중심으로 전환하여 이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전문적인 문화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일반직 공무원이 문화행정직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2년정도 근무기간내에는 전보를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문화행정직에 재직하는 기간을 늘림으로써 업무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 3. 非營利文化組織의 設立 · 運營 活性化

우리나라 지역문화환경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문화행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문화행정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부문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조직형태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직형태로 비영리문화조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비영리문화조직은 특정 문화행정 업무에 한정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비영리문화조직에 대해 업무와 권한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몇가지 영역에서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문화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시점에 이르렀다.

첫째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성하고 있는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영 관리 업무이다.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민간부문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지원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며, 지원대상 집단인 문화예술인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원사업은 일정한 지원원칙을 설정해야 하고, 지원절차는 투명해야 하며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문화예술지원업무를 소수의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과정을 둘러싼 공정성의 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그리고 비영리문화조직이 이러한 기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재원을 다양하게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현재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에 경기도가 경기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하고 문화정보센터 업무를 수행할 경기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있는 것은 매우 가치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공공문화시설을 건립할 때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 하기 보다는 제3부분 조직인 비영리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문화예술회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문성의 결여, 경직적 운영, 비효율적 경영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비영리법인 형태의 공공문화시설 운영체계는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경영기법과 전문성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영리법인으로서의 공공문화시설은 문화행정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문화시설 경영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

며, 현재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제도로 인한 경영의 단절과 비전문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센느내셔널은 비영리조직인 협회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극인 등 문화예술인이 관장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공공 문화시설을 비영리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경우에는 그동안 제3부문의 조직들을 문화시설 경영 및 문화예술진흥지원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 건립된 후쿠오카시의 국제문화정보센터(아크로스 후쿠오카)의 공공문화시설은 “재단법인 아크로스 후쿠오카”라는 비영리법인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 비영리재단법인은 아크로스 후쿠오카의 문화시설과 공공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1995년 8월에 기본재산 2억엔으로 설립되었다. 후쿠오카 현정은 “후쿠오카현 국제문화정보센터 조례”와 “후쿠오카현 국제문화정보센터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재단법인 아크로스 후쿠오카 설치근거와 관리 위탁 및 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재단법인의 주요 사업으로는 ① 음악, 무대 등의 예술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 ② 국제적인 학술문화교류사업 ③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업 ④ 생활, 문화, 행정, 관광 등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⑤ 아크로스 후쿠오카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수탁 등에 관한 사업 등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민간기업,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재정, 능력, 정보, 인재 등을 모아 조직하는 제3섹터형 문화재단이 늘어나고 있다. 예컨대 오사카부 문화진흥재단은 부에서 기본재산 20억엔을 전액 출연하여 1989년 5월에 설립된 제3섹터형 문화재단이다. 이 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오사카 교향악단 운영, 국제현대조형공쿨, 오사카미술제의 개최, 무대예술과 문화사업의 추진, 문화시설의 관리 운영, 음악문화시설의 관리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로 대규모 문화예술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경우 문화예술축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이다. 해외 도시들의 경우 축제사무국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광주시가 광주비엔날레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 4. 公立文化施設의 經營革新

종합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등 공공문화시설들은 정부관료제의 비능률성과 경직성을 극복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경영기법과 전문성을 도입하여 고 객지향적이며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으로 다음 몇가지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공립문화시설을 공공법인화 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체계가 전문성의 결여, 경직적 운영, 비효율적 공간활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회관을 공공법인화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운영방식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그 법적 지위를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관장은 공공법인 형태의 문화예술회관을 책임 경영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에 대한 감각과 애착을 지닌 인사중 경영능력이 우수한 사람으로 임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법인 형태의 운영체계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형태에 비하여 인력관리와 조직체계 및 재정운동을 신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문화행정 전문인력을 더 쉽게 충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실시해야 하며 중요한 사업 승인 및 감사기능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공립문화시설의 마케팅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획, 홍보, 회원관리 등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적극적으로 관객을 개발하고 티켓 판촉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셋째는 문화예술 사회교육 서비스와 문화정보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여 고객지향적인 경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문화예술회관은 대관과 건물관리 기능외에도 자체 기획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을 돕기 위한 문화교육 강좌 개설, 문화정보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최근에 문화체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의 집” 사업은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문화정보서비스 기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회관에도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디오라이브러리, 시청각 영상홀, 문화정보라운지 등 뉴미디어 시설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소프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 5. 文化親和的 都市計劃 및 都市開發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가 진전되는 포스트모던사회에서 도시정책은 효율주의나 기능주의 보다는 보다 인간주의적이고 질적인 접근방법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의 제반정책을 문화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문화친화적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문화친화적인 도시정책이란 도시의 제반정책을 문화적인 시각(cultural perspective)에서 접근하기 위한 것이다. Franco Bianchini은 “Cultural Planning Approach”개념을 사용하여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 개념은 문화계획을 생활체육, 도시경제, 교통,조경, 환경, 관

광, 토지활용, 건물환경, 주택, 도시설계, 도시안내, 도시이미지, 청소년 등 도시의 제반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통합전략이다(Franco Bianchini, 1993). 도시정책을 문화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전략은 최근 종합적인 도시만들기의 시각에서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이 문화정책을 도시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할 때 문화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지역활성화의 촉매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친화적 도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몇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계획 및 문화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계획에 문화시설용지를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대규모의 공동주택단지 조성, 택지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도시설계지구 및 상세계획지구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인구 및 세대수 등 문화복지 수요를 고려하여 일정규모의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Harold R. Snedcof는 「Cultural Facilities in Mixed-Use Development」에서 이러한 접근을 문화예술을 포함한 혼합도시개발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일정한 지역을 개발할 경우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외에도 문화시설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는 접근전략이다. 이러한 개발방식은 개발지역의 상업시설과 예술시설이 상호 지원하고 도와주는 관계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 도시개발 계획에 문화시설의 설치를 고려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매력과 활력을 창출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도시 정책과정에 문화부문의 인사가 참여하여 문화적인 시각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에 문화부문 인사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

셋째, 현재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에서 문화시설의 설치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문화시설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지역문화복지 수요와 주거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문화지구 조성방안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지구란 정책적으로 특정한 그리고 바람직한 문화적 특성을 지닌 지역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이러한 특성을 한층 더 보존 육성하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 문화지구 개발방식은 일반적으로 도시의 “특정지역”에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을 집중 육성, 적극적으로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기서 “특정지역”이란 문화자원이 집적되어 있는 기존의 도시지역과 새로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지역 모두를 의미한다. 신도시 개발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에 문화시설용지를 일정비율 포함시켜 문화특구로 조성할 수 있다.

문화지구를 조성하는 데는 인센티브 접근과 규제 접근방법이 모두 활용된다. 인센티브 지구제(incentive zoning)란 문화특구 조성 목적에 적합한 시설이 들어설 경우에는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문화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규제 완화, 재정지원, 세제혜택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문화지구 조성 목적에 적합한 시설이 건립되고, 문화업종이 입주할 경우에는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규제적 접근이란 문화특구지역의 문화적, 예술적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문화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나 업소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나 문화지구는 “문화도시”라는 강한 이미지를 창출하며 도시 마케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매력을 창출하여 사람들을 이 지역으로 끌어들이며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그리고 지가상승, 투자유도, 주민소득향상, 고용창출 등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문화지구 조성 사례로는 미국의 뉴욕(South Street Sea), 달라스(Dallas Arts District), 클레브랜드(Playhouse Square), 피츠버그(Downtown Cultural District) 등을 들 수 있다. 이 사례들은 특정지역을 문화지구(cultural or arts districts)로 지정, 토지이용, 세제혜택, 건축규제완화, 재정지원 등 각종 정책적인 인센티브와 규제를 통하여 도시의 문화환경을 조성한 바 있다. 이 도시들은 주로 예술지구를 예술과 경제를 연계하여 조성하였으며, 예술지구내 상업시설에서 나온 수익금을 문화환경을 조성하는데 투자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 6. 地域別 文化藝術 特化와 文化競爭力

지역별 특화전략(regional specialization)은 다양한 문화산업과 문화예술 영역을 지역별로 차별화하여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문화예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문화에 대한 선명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지역문화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1도시 1문화” 전략은 문화예술축제, 문화시설, 문화유산, 전통공예, 도시 이미지 형성사업, 가로환경, 그리고 그밖의 관련 사업들과 연계되어 총체적인 접근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프로그램에 이러한 “지역별 문화특화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역문화에 대한 지원을 지역별로 경쟁력있는 문화를 집중 개발하도록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V. 結 論

지금까지 지역문화행정의 가치변화 양상과 실태를 파악하고, 문화복지적 관점과 지역경쟁력 관점에서 문화행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앞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커짐에 따라 지역문화행정에 대한 수요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문화복지시대에서 문화정책은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는 물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문화행정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문화경영, 문화관광, 문화마케팅 마인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정책도 문화적인 시각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 參 考 文 獻

- 임학순, “문화권과 도시문화환경 조성,” 「문화예술」 10월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6.
- 임학순, “지방문화행정의 생산성 향상방안,” 「문화정책논총 제 6집」,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4.
- 임학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시론,” 「문화정책논총」, 제7집,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결과보고서」, 1995.
- 한국개발연구원·국민경제연구소 역, 「문화시설의 경제효과: 일본국립 민족학 박물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1994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지표 조사 연구」, 1995.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춘천인형극제의 지역경제·사회문화적효과」, 1995.

- Bianchini Franco, *Urban Cultural Policy in Britain and Europe : Toward cultural planning*, Faculty of Humanities, Griffith University, 1993.
- Bainchini F. and Parkinson M, *Cultural policy and urban regeneration : the West European experience*, Mancheste University Press, Manchester, 1993.
- Barnett Jonathan, *An Introduction to Urban Design*, Harper & Row Publishers, New York, 1982.
- Getz Donald, *Festivals, Special Events, and Tourism*, Van Nostrand Reinhold Co. Ltd., 1991.
- Myerscough John, *The economic importance of the arts in Britani*, London : Policy Studies Institute, 1988.
- Snedcof Harold R., *Cultural Facilities in Mixed-Use Development*, the Urban Land Institute, Washington, D.C., 1990.